

# 유아 의무교육 및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670
----------	-----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24일

발 의 자 : 전병주, 최 선, 권순선,  
조상호, 김수규, 황인구,  
최기찬, 채유미, 김 경,  
장상기, 오현정, 이동현,  
장인홍 (13명)

## 1. 주 문

- 취학 전 1년의 유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기 위해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의 개정을 촉구함.

## 2. 제안이유

- 현재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 교육 체제를 정비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국가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유아 무상교육 확대와 의무교육 추진 방안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음.
- 최근에 우리나라도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왔으며, 2012년부터 유아 교육·보육 공동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함으로써 취학 전 3년간의 유아교육비를 정부에서 책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이러한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아교육의 질적 변화와 개혁 논의가 저조한 상태임.

- 따라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가 인재를 육성함에 있어 그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유아교육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정부 및 해당기관이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여 취학 전 1년간의 유아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함.
- 한편, 현재 유치원은 법적으로 “학교”로 명시되어 있으나 일제강점기에 일본학자들이 독일어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을 일본식으로 잘못 번역하면서 유치원 명칭이 사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1945년 종전 이후 유치원 명칭을 유아원으로 변경한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1996년에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하는 등 교육법제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유치원은 모든 운영이 공적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으로 인해 공적 통제영역 밖에 있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친일잔재 청산과 법체계의 안정성, 그리고 시민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정부 및 해당기관이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할 것을 촉구함.

### 3. 이 송 처

- 청와대, 국회, 교육부

# 유아 의무교육 및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방향은 초(超)저출산 시대와 함께 교육복지 확대를 통해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이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되었고, 2012년에는 취학 전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이 정부 책임 하에 실현되었다.

그러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유아에 대한 국가의 시혜적 교육비용 지원만을 의미할 뿐, 미래 인적자원으로서 유아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1년간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에 포함시키고 있고,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도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처럼 관리하고 있는바, 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유아 무상교육의 내용과 범위는 세계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 걸음마 단계이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및 교육의 질 관리 또한 낮은 수준이다.

이런 점에서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공책임을 강화하고 나아가 미

래 사회 변화에 맞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 및 해당기관은 현재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의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을 개정하여 “취학 전 1년”을 의무교육기간에 포함시켜 현재의 출산율 저조현실 속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국가인재 양성에 힘을 모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은 1897년에 처음 소개되었고 한국 최초의 유치원은 1909년 대한제국의 함경북도에 나남유치원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14년에 선교사 브라운리 여사가 '이화(梨花) 유치원'을 설립하면서 전문가에 의한 유아교육이 시작된다.

그러나 이러한 유치원이란 용어는 과거 일본학자들이 독일어인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을 일본어로 번역하면서 생겨난 일제 잔재가 있는 개념이다. 이로 인해 중국은 1945년 종전 이후 유치원 명칭을 유아원으로 변경했으며, 우리나라도 초등교육에 있어서는 1996년에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하여 일제 잔재를 청산한 경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유치원 명칭은 100년이 지나도록 옛 이름을 떨쳐내지 못한 채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왔는바, 지금이라도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것은 일제 잔재 청산에 있어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유치원이라는 명칭 사용은 현장에서조차 법적으로 “학교”로 규정된 유치원이 정식 학교 속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또한 초·중등학교

에 비해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정부 및 해당기관은 유아 교육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아교육법」 제2조를 개정하여 현재 사용하는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나아가 공교육 기관으로서 유치원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며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평등한 교육기회의 보장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 교육의 정착을 위해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취학 전 1년간의 유아교육을 의무화하고,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5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